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가합1006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혜인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빈

변론 종결2021. 7. 6.

판결 선고2021.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C가 2019. 1. 18. 주식회사 D에게 물품을 납품한 대가로 주식회사 D이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물품대금채권 510,806,460원에 관하여 체결된 2019. 1. 31.자 물품대금채권의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D에게 위 물품대금채권의 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510,806,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의 어음 발행 및 C의 배서

1) 주식회사 D(2020. 1. 22. 주식회사 E로 상호를 변경하고 2020. 1. 29. 이를 등기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과 후 모두 'D'이라고 한다)은 2018. 9. 10. 아래와 같이 어음금액 합계 525,365,060원인 전자어음 5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수취인을 C(F생)1) 로 하여 발행하였다.

G(분할번호 1)	125,365,060원	2019. 2. 11.	주식회사 H 역삼동 지점
G(분할번호 2)	100,000,000원		
G(분할번호 3)	100,000,000원		
G(분할번호 4)	100,000,000원		
G(분할번호 5)	100,000,000원		

2) C가 2018. 10. 1.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하고, 주식회사 I가 같은 날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하였다. J이 2019. 1. 31. 이 사건 어음 중 분할번호 3, 4 어음에, 2019. 2. 1. 이 사건 어음 중 분할번호 1, 2, 5 어음에 각 배서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어음에 대한 지급거절 및 어음금 청구에 대한 판결

1)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2019. 2. 11. 주식회사 H 역삼동 지점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어음에 근거하여 C를 상대로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2019. 10. 16. 'C는 원고에게 525,365,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08129호), 이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와 피고의 채권양도계약 및 양수채권의 변제

1) C는 2019. 1. 31. 피고에게 'C(상호: M)가 2019. 1. 18. D에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가로 D이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물품대금채권 510,806,460원'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C가 2019. 2. 7. D에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D에 도달되었다.

2) 피고는 D이 신청하여 2019. 2. 13. 개시된 회생절차(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23호)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채권에 관하여 508,809,29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인 C에 대하여 525,365,060원의 어음금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D이 실질적으로 파산에 이르러 원고는 이미 C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어음금 상환청구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D에 대한 510,806,46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피고는 C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계속 연체하였다면서 C의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하였고, C의 D에 대한 4,857,169,9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은 D이 파산 상태에 있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이상 C의 적극재산으로 산정할 수 없다.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가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D과 C, 피고의 관계가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으로서 피고가 D에게 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없으며, C와 피고가 실질적으로 동일인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만약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채권을 변제받았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10,806,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약속어음에 있어서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상환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5254 판결 등 참조).

2) D이 발행한 이 사건 어음에 C가 2018. 10. 1. 배서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어음 중 분할번호 3, 4 어음은 2019. 1. 31.에, 이 사건 어음 중 분할번호 1, 2, 5 어음은 2019. 2. 1.에 각 교부받은 사실,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 체결일이 2019. 1. 31.인 사실, D이 2019. 1. 31.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사실, 원고가 만기일인 2019. 2. 11. 지급은행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발행인인 D의 자력이 불확실하여 만기에 지급거절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어음의 만기일 도래 및 지급거절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2019. 1. 31. 또는 2019. 2. 1.에 원고의 C에 대한 어음금상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어음 중 분할번호 1, 2, 5의 어음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어음금상환청구권의 경우 원고가 최종 배서를 받을 당시 만기 전 상환청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 체결일 다음 날에 발생하게 되므로,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위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위 분할번호 1, 2, 5 어음을

교부받기 전에는 위 분할번호 1, 2, 5 어음에 관하여 원고로서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형성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C가 이 사건 채권양도 전에 위 분할번호 1, 2, 5 어음에 배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에 이미 위 분할번호 1, 2, 5 어음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어음금상환청구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달리 위 분할번호 1, 2, 5 어음과 관련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 전에 원고의 C에 대한 어음금상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분할번호 1, 2, 5 어음에 따른 어음금상환청구권(325,365,0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어음 중 분할번호 3, 4의 어음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어음금상환청구권의 경우 원고가 최종 배서를 받을 당시 만기 전 상환청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 발생하게 되는바, 그 선후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위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앞서 이 사건 어음 중 분할번호 1, 2, 5 어음에 관하여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에 이미 위 분할번호 3, 4 어음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어음금상환청구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달리 위 분할번호 3, 4 어음과 관련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 전에 원고의 C에 대한 어음금상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분할번호 3, 4 어음에 따른 어음금상환청구권(2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4) 다만, 위 분할번호 3, 4 어음의 교부 시점과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 체결 시점의 선후가 불분명하므로, 원고가 위 분할번호 3, 4 어음을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 체결 전에 교부받았다고 보면 위 분할번호 3, 4 어음에 따른 어음금상환청구권(2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의 사해행위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의 사해행위성

1)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0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C가 2019. 1. 31. 당시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4,857,169,900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D이 2019. 1. 31. 신청한 회생절차(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23호)에서 '회생채권 중 일반상거래채권, 확정구상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0%를 출자전환하고 20%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2%는 제1차년도(2020년)부터 제4차년도(2023년)까지 매년 3%씩, 40%는 제6차년도(2025년)부터 제9차년도(2028년)까지 매년 10%씩 균등분할변제하며, 나머지 48%는 제10차년도(2029년)에 변제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이 2020. 1. 31. 인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C는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의 체결일인 2019. 1. 31. 당시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4,857,169,9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D이 2019. 1. 31. 회생개시 신청을 하여 곧바로 위 물품대금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 곤란한 사정은 있었으나, 회생 절차를 거쳐 위 채권액의 80%는 출자전환을 통한 대물변제, 나머지 20%는 기한 유예를 통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하면 위 물품대금채권이 이 사건 채권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물품대금채권 4,857,169,900원을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의 체결 당시 C가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의 진술에 따라 C의 소극재산으로 피고에 대한 2,399,450,350원 상당의 임가공대금채무와 J에 대한 525,365,060원 상당의 어음금채무가 있었다고 보아 위 물품대금채권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여도 C의 재산으로 1,932,354,490원(= 4,857,169,900원 - 2,399,450,350원 - 525,365,060원)이 남게 되고,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1,421,548,030원(= 1,932,354,490원 - 510,806,460원)이 남게 된다.

결국, C가 피고에 대한 채무 등 일부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 행위로 인하여 C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것이 심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설령 C의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 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의 대상 역시 C의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행위로 인하여 적극재산이 감소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4)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채권양도의 사해행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

원고의 피보전채권과 이 사건 채권양도의 사해행위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은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여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의 취소통지 절차 이행을 구하거나 양수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영풍

판사김현주

판사강창호

1)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는 'K'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자어음 배서확인서에는 'L'로 기재되어

있다.